

KBIZ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
수 신 전 조합원업체 대표이사

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(병원선, 벌크화물선)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-312 (2026.03.12.)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총괄팀-133 (2026.03.10.)
3. 본 조합에서 추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025년 신규 등록한 세부제품 ‘병원선’ 및 ‘벌크화물선’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(2025.11.19)로부터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조사 한 바, 1개업체만이 ‘병원선’ 및 ‘벌크화물선’ 세부제품을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.
4. 신규 등록된 ‘병원선’ 및 ‘벌크화물선’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 2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6개월(‘26.05.19)이후 10개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바, 조합원업체에서는 ‘병원선’ 및 ‘벌크화물선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직접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시 조달청 낙찰률(88%) 보장 불가

< 2025~202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(상선부분) >

제품명	세부품명	세부품명번호	비고
상선	어선	2511150201	
	예인선	2511150601	
	바지선	2511150701	
	자동차도선	2511150801	
	여객선	2511150802	
	병원선*	2511151801	25년 신규지정
	벌크화물선*	2511152401	25년 신규지정
	소형보트	2511152701	
	기동정	2511159701	

※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제10조의 2(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)

① 중기부장관은~~다만, 지정 당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1. 세부품명번호(10자리)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경우 : 지정 유지

2. 세부품명번호(10자리)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: 해당 세부품목(10자리) 지정 제외.

다만, 제8조의3에 따른 신산업 제품은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면 지정 유지

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
이사장 김 성 태



전결(2026/03/19)

대리 홍태훈

부장 신정철

전무이사 한기원

협조자

시 행 회원사업부-26호 (2026. 03. 19.)

접 수

우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, 4층(조선회관) / http://www.kosic.or.kr

전화 (02)587-3121 전송 (02)588-3671 / jcshin@kosic.or.kr / 공개